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1. 4. 10
- 나. 제출 차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1년 4월 10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1. 7.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 제안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상위법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민원편의증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에서 폐지된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 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2조제3호)
-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멸실신고 조항 삭제(안 제6조)
- 상위법에서 폐지된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
- 축사의 유지관리에서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함(안 제24조)
- 적용의 배제 중 1마리 이하의 소·말을 1마리 이하의 소·젖소·사슴·말이라고 하고 가축의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 3두 이하의 경비견 또는 애완견 동물을 삭제함(안 제26조제24호)
-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조항을 삭제함(안 제27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타조 등을 식용 목적으로 대량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 환경파괴의 원인되고 있는데 개정조례의 가축의 범위에서 빠진 이유는? ○ 규칙은 어떠한 사안을 정해도 되고 안정해도 무방한 것 아닌가? ○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에서 정한 가축의 용어 정의에 빠져 있어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다보니 삽입하지 않았으나 조례 시행규칙 운영시 개나 타조 등을 삽입하도록 하겠음 ○ 네. 하지만 규칙에 필히 삽입하도록 하겠음 ○ 상위법에서 정한 가축의 용어 정의에 빠져 있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로 정하기는 무리임

○ 상위법에서 정한 가축의 용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아 삽입을 못 한다면 단서 규정을 만들어 규제하면 되지 않겠는가?

○ 단서규정으로 하면 무방할 것 같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 불 임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471호
의결년월일	2001. 7. 14 (제88회)

제출년월일 : 2001. 7. 12

제 출 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중 “가축”의 용어 정의에 요즘 식용을 목적으로 대량사육되고 있는 개와 타조 등이 빠져있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켜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단서규정으로 애완동물, 조류 등을 삽입하여 규제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축”의 용어 정의에 단서 규정으로 애완동물, 조류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 제2조제3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애완동물, 조류,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3. “가축”이라 함은 소(젖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3.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u><신설></u>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3. <u>다만 애완동물, 조류,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u>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1호
의결년월일	2001. 7. 14 (제88회)

제출년월일 : 2001. 4.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상위법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민원편익증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에서 폐지된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 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2조제3호)
-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멸실신고 조항 삭제(안 제6조)
- 상위법에서 폐지된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
- 축사의 유지관리에서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함(안 제24조)
- 적용의 배제 중 1마리 이하의 소·말을 1마리 이하의 소·젖소·사슴·말이라고 하고 가축의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 3두 이하의 경비견 또는 애완견 동물을 삭제함(안 제26조제24호)
-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조항을 삭제함(안 제27조)

[수정안 포함]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젓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조류, 기타 오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및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4조 중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를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한다.

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용하는 1마리 이하의 소·젓소·사슴·말, 3마리 이하의 돼지·양, 5수 이하의 닭·오리

제27조 및 제3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u>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 및 신고대상 외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u>	2. <삭제>
3. "가축"이라 함은 소(젓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u>애완동물,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u>	3.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젓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다만, <u>애완동물, 조류, 기타 오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u>
4. 및 5. (생략)	4. 및 5. (현행과 같음)
제6조(오수처리시설 등의 멸실신고) ①오수처리시	제6조<삭제>

설을 멸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
한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멸실신고를 한 자
는 오수처리시설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건축물멸실신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멸실신
고가 된 시설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후 관리대
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시장
은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축사의 유지관리)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
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
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26조(적용의 배제) (생략)
- 1.~3. (생략)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용하는 1
마리 이하의 소·말, 3마리 이하의 돼지·양, 5
수 이하의 닭·오리, 3두 이하의 경비견 또는
애완견 동물
 5. (생략)

제2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3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청소차량, 오
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27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과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소독기 1조 이상

제22조<삭제>

제24조(축사의 유지관리) 가축을 사육하는 자.....
.....
.....
.....

- 제26조(적용의 배제) (현행과 같음)
- 1.~3. (현행과 같음)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용하는 1
마리 이하의 소·젓소·사슴·말, 3마리 이하의
돼지·양, 5수 이하의 닭·오리
 5. (현행과 같음)

제27조<삭제>

제3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을 구청장, 동장(단, 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분1동장, 오정동장 제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오수·분뇨처리시설 멸실신청서>

제37조<삭제>

별지 제5호서식<삭제>